

産業合理化와 租稅減免規制法

財 務 部

1. 租減法改正의 主要内容

租減法(租稅減免規制法)의 主要改正內容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실기업 정리와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産業合理化稅制의 補完 둘째, 지방경제 균형발진을 위한 企業本社의 地方移轉에 대한 세제지원 세제,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少額家計貯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세제, 農漁民 所得増大를 위한 세제지원 마지막으로 私學育成을 위한 세제지원 등이다.

2. 産業合理化 稅制 補完內容

◆ 從前 産業합리화 지원내용 ◆

종전부터 租減法에는 산업합리화 추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즉 政府에 설치된 産業政策審議會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상호간에 合併을 하거나 資產을 讓受渡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합리화 지정기업이 債務를 면제받거나 면제한 경우에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실기업의 정리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稅金面에서의 障礙要因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한 정리에 未洽점이 없지 않았고, 특히 斜陽 또는 構造的 不況으로 不實化된 기업이나 産業으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으로 과감하게 事業轉換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었다.

◆ 이번 補完된 內容 ◆

기업정리에 따르는 資產處分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화 지정기업 相互間에 資產을 서로 讓受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去來銀行에 바로 넘겨 기업채무와 相計시키는 경우 去來銀行을 통하여 成業公社·土開公에 讓渡하거나 委託 處分하는 경우 및 産業政策審議會에서 資產인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그 자산 양도에 따른 差益에 대하여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정리기업을 원활하게 引受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통상 실사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된 資產不足分(세법상 경영주가 인출한 소득으로 봄)에 대한 세금은 산업합리화의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 대신 경영상 책임이 있는 前經營主가 직접 납세토록 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산업합리화로 지정된 기업의 企業主 등이 기업채무를 갚아 주기 위하여 個人所有 財產을 기업에 무상으로 내놓을 경우 기업이 받는 贈與利益에 대해 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며 합리화 지정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母企業이나 特殊關係會社가 정리기업을 위하여 保證한 채무를 대신 辨濟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채무를 변제한 관계회사의 소득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업종으로의 事業轉換 및 合理化 投資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화 지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종전 시설 등 資產을 處分(賣却)하거나 비주력 계열기업 정리를 위해 出資株式을 處分(賣却)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移越控除 期間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處分 代金으로 전환하려는 업종 또는 주력업종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投資稅額控除나 特別償却(원래 감가상각 금액에 100% 追加償却 인정) 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金融機關의 不實債權 整理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流入不動產을 유입후 2년내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貸損金을 再評價積立金과 바로 相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산업합리화 세제를 補完하게 된 背景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不實企業 問題라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부실기업은 기업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이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 등 개별기업의 單純한 不實經營에 따른 부실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해운업에서 볼 수 있는 해외수요의 격감 등 국제여건의 변화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 신기술·첨단기술의 등장으로 국제경쟁력의 약화·상실 등 경제구조·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있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經濟環境의 質的인 變化 즉 일부 構造不況에서 부실기업이 발생되고 있다는 데 특히 문제가 있다.

최근 國際經濟動向은 신기술·신상품을 앞세

워 철저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설의 재투자, 경영의 혁신 또는 경쟁력 있는 상품·업종으로의 신속한 변신 등을 간단 없이 추구해도 國際競爭力 優位確保가 어려운 마당이다.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능률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不實企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출·고용 등 經濟成長을 持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산업전환의 體質改善과 國際競爭力 強化라는 측면에서 사양 또는 구조적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의 정리 및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의 신속한 事業轉換과 비주력계열 기업 및 기업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專門主力 企業育成이 긴요할 뿐 아니라 최근 부실기업 증가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 누증이 금융기관 고유 기능면에까지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産業合理化稅制 補完은 不可避한 것이다.

4. 부실기업 정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부실기업을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곧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대로 放置하는 경우 시간이 갈수록 그 부실의 파급효과는 金融機關의 不實累增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더 큰 부실화로 擴大되어 장차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부담을 最少化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빨리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장래에 겪게 될지도 모를 더 큰 國民經濟的 負擔을 豫防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防置해 두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자를 못 받아 收支가 나빠지고 원금도 회수할 수 없어 貸出資金이 不足하게 되는 등 경영을 해가는데 많은 負擔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실기

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들도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勞使紛糾가 잦아지는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資源의 效率性이 떨어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5. 부도처리 등 原則대로 정리해야 할 것 아닌가?

回生 可能性이 없는 기업은 完全整理가 불가피 하지만 기업이 부실하다 하여 무조건 부도처리 등 企業을 倒産시키는 방법에 의한 때는 일반적으로 企業稼動이 斷絶되거나 상당기간 中止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국민경제에 큰 混亂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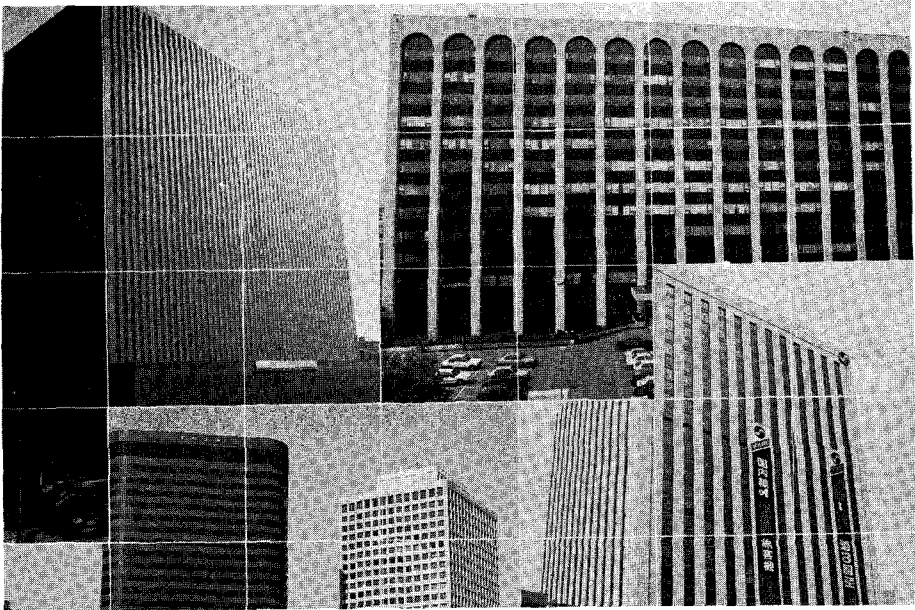
즉 ▲ 下請 中小企業體는 물품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 從業員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물론 직장을 잃게되어 失業問題까지 발생하며 ▲ 특정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어 소비자 등 需要者는 상당기간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 輸出業體의 경우는 대외거래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등 우리가 치뤄야 할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장래의 사회적 부담만 더욱 加重시키게 되므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選別的인 處理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 기업이 경쟁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금융지원으로는 도저히 回生되지 않는 경우에는 不渡處理 후 整理하며 ▲ 回生 能力을 상실하였다든 “해외건설” 등과 같이 倒産으로 인한 副作用을 고려하여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부도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適切한 第3者에 의한 引受를 모색하고 ▲ “해운” 등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구조적인 면에서 産業構造調整이 필요한 경우에는 産業政策的 차원에서 일시적인 資金支援과 병행하여 동일 또는 유사업종간의 合併이나 第3者 引受 또는 業種轉換 등 적절한 對策을 모색하는 한편 ▲ 企業의 부실화가 經營主의 能力不足에 기인하는 경우로서 제3자인수를 통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適切한 引受者를 모색하는 등 합리적 대책을 모색하여 나갈 것이다.

6.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은 누가 어떻게 選定하나?



産業合理化 對象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 國民生活에 필수적인 물자의 생산 또는 서어비스 제공산업, 國家의 기간산업, 輸入代替 원자재 생산업, 外貨獲得事業 및 農漁村 소득사업 또는 농·수·축산물 가공산업으로서 ▲ 그 산업의 합리화나 진흥이 國民生活의 負擔을 현저히 輕減할 수 있거나, 國民經濟 全般에 영향을 미치는 것, 生産性을 向上할 수 있는 것 또는 國際收支 改善에 기여하거나 農·漁民 및 養畜家의 소득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산업이나 기업이라야 하며 ▲ 생산의 전문화,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의 정리 또는 전환, 시설투자의 적정화, 적정생산 규모 등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産業政策審議會에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의 지정이나 합리화를 위한 기준 등은 産業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정책심의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47 조 및 政府組織法에 근거를 두고 大統領令으로 設置되어 산업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책기구이며 경제기획원장관 등 10개 경제부처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심의회는 各界 專門家로 구성된 산업정책 자문회의 및 民間協議會의 사전 검토를 거침으로써 民間의 參與를 통한 객관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리화 기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國民經濟的인 次元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檢討하고 산업정책심의회의 客觀性 있는 運營을 制度化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산업이나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대상이 아닌 산업이나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7. 健實한 企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아닌가?

부실기업 정리를 세금 감면하여 주는 것은 스스로 不動産을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한 健實한 企業과 비교할 때 형평의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國家經濟 全般的인 側面에서 볼 때 기업정리 과정에서 障礙가 되는 세금문제를 해소하여 産業合理化를 促進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사실 부실기업의 문제는 그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放置할 경우 부실이 국민경제 전반에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 治癒時期도 놓치게 되어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不實要因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급히 이를 정리하는 것이 國民經濟의 健全性 回復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 전체로도 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게 되면 구제금융이 불필요하므로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 상대적으로 健實企業이나 中小企業쪽에 資金供給面에서도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오늘의 건실기업도 장차 國際市場 등의 변화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할 경우 산업합리화 세제지원의 적용을 排除할 수 없다고 하겠다.

8. 일부 不實化된 大企業에만 적용되는가?

産業合理化시 세제지원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조·광업·건설·운수·수산업 등 5개 업종의 법인 기업수는 19,500여 개이나 이중 80% 이상인 15,700여 개가 中小企業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해 産業合理化를 추진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체를 제외하고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실효성도 없다.

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中小企業固有業種을 중소기업에 양도하거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자

체가 극도의 사양 또는 불황에 처하게 되었다든가, 경쟁력 제고나 설비의 적정화를 위해 中小企業의 統·廢合 등 산업을 합리화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사 大企業에 대하여 産業構造의 調整 등을 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이러한 지원이 있음으로써 해당기업의 從業員과 下請業體 등 관련기업도 안심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업원이나 하청중소기업도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9. 성실한 국민에게 稅負擔을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이번 産業合理化 세제보완은 기업정리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最小限의 稅金을 排除하려는 것으로서 만일 이러한 장애요소를 그대로 둔다면 기업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산업합리화로 인하여 예상했던 正常的인 稅收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정리 할 때 세계상의 장애요인을 그대로 둠으로써 不實企業의 정리가 늦어진다거나 방치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부실의 波及效果는 금융기관의 不實累增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더 큰 부실화로 확대되어 장차의 社會的負擔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國民全體의 부담은 增加될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정리 때의 세제지원은 장차 국민전체의 부담을 事前에 막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10. 기업의 과거 不動產投機 문제는?

합리화지정 기업이 자산을 讓渡한다 하여 무조건 모두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업정리 과정에서 不可避한 자산처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과다보유한 非業務用 不動產만을 처분하려 한다면지 할 경우에는 합리화

지정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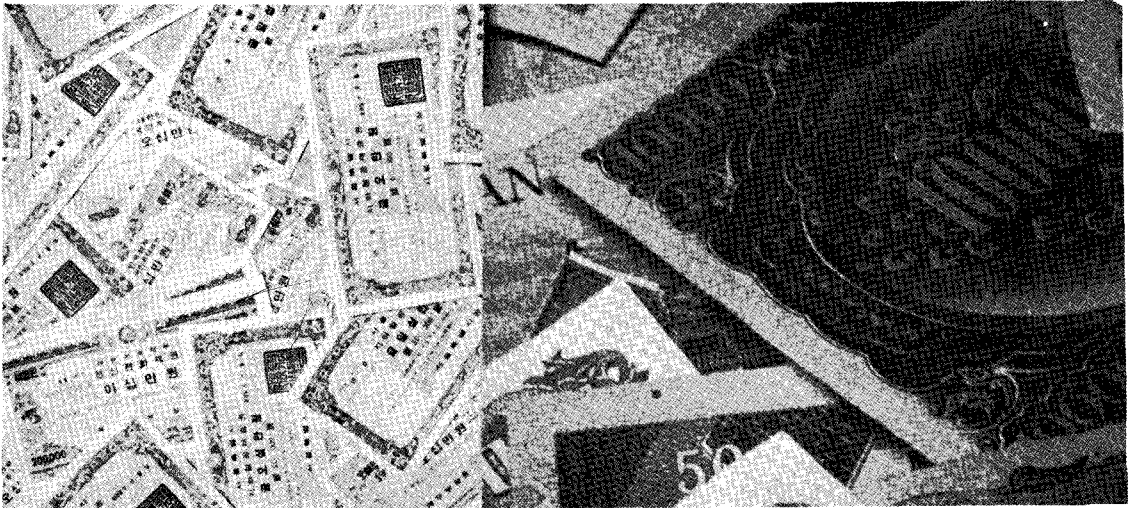
그리고 産業政策審議會가 엄격히 심의 결정한 産業合理化 基準에 따라 정리가업이 차입금을 갚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바로 代物辨濟하거나 成業公社·土開公이나 산업정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고 제멋대로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감면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산처분에 따른 악용의 소지를 배제하고 있다.

한편 기업정리 때 자산양도를 토지와 같은 不動產에 限定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면제를 不動產 投機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공장건물·창고·기계장치와 같은 공장설비는 물론 공장에 필요한 토지 및 투자주식 등 기업에 속하는 사업상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한 非業務用 不動產 처분에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不動產 投機 측면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다.

11. 惡用될 소지는 없는가?

이번 조감법 개정내용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不實企業整理 등 産業合理化를 촉진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보완을 함에 있어서 산업합리화 유도에 장애가 되고 있는 租稅上의 要因을 제거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면서도 정리가업의 企業主나 經營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가급적 기업 및 기업 관련인들의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惡用素地 排除를 위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합리화에 따른 세제지원은 ▲ 경제장관들로 구성된 産業政策審議會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 이 경우에도 동 심의회에서 정해진 合理化 基準에 따라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사후 요건을 갖추어야 세제지원이 적용되도록 규제하였으며 ▲ 또한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産業政策諮問會議과 産業別 民間協議會 등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악용소지를 없애고 그 운영의 공정성을 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合理化指定企業이 第三者에게 任意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變則去來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 합리화 지정 기업의 원활한 引受가 이루어지도록 종전 부실경영으로 인한 인수기업의 源泉稅義務는 배제하면서도 前經營主에게는 원천세를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 전기업주 등이 합리화 지정 기업에 자기소유 재산을 無償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企業의 受贈利益을 非課稅하되 당해기업의 채무상환 범위내에서만 면세하도록 조건을 강화하였다.

12. 不實內容을 公開하면 안 되나?

일부에서는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不實債權의 내용을 공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무역거래나 외자도입을 비롯한 國際金融去來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으로부터 빌려쓴 外資마저도 상환을 요구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甲”이란 銀行이 가장 부실채권이 많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甲”銀行을 통한 외국은행과의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이 필

요한 경우에도 차입조건이 악화됨으로써 “甲”銀行이 外國銀行들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물론이고 “甲”銀行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전한 국내기업마저도 외국기업들로부터 거래를 기피당할 우려도 있다.

또 국내적으로도 사전에 부실내용이 공개된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동요라든지 下請業體를 비롯한 거래기업간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관련기업의 連鎖的인 倒産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기업이 완전히 파산되지 않는 한 그 기업의 대외적인 信賴保護는 물론이고 자국내에서의 불필요한 經濟的 動搖를 막기 위하여 그 실상을 공개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선불리 공개했을 때 예상되는 社會·經濟的 問題들을 감안하면 公開問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3. 앞으로 기업의 不實化를 事전에 豫防하기 위하여는?

84년 제조업의 경우 기업자금 중 53.2%는 銀行 借入金이나 會社債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은 企業資金의 많은 부분을 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차입금 의존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

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금만 여건이 나빠져도 限界企業이 발생되어 기업이 부실화해질 소지가 많이 있는 실정이다.

또 타인 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액 중 3분의 1 이상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企業經營의 위험을 당해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증대를 통해 財務構造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번에 조감법 외에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을 개정하여 기업내부 유보를 저해하는 紙上配當課稅制度를 획기적으로 폐지·보완하고 增資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非生產的 資金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自己資本 増大를 통해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紙上配當課稅制度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주주간 및 배당법인 주주와 비배당법인 주주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非上場法人 株主에게 課稅하는 제도이나 이는 기업의 内部留保를 저해하고 未實現所得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주주가 株式을 處分할 때 課稅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할 때는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增資所得控除制度를 강화하였다.

종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85년까지만 限時的으로 운영되던 증자소득공제제도를 法人稅體系로 제도화하여 86년 이후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하고 증자소득 공제기간을 延長하며 증자소득 공제율도 上向調整 함으로써 기업자금을 借入보다는 增資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非生產的 資金으로 사용된 기업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借入經營에는 不利益을 주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경영을 유도하였다.

借入金 過多法人에 대하여는 현재도 다른 법

인의 株式取得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만 주식 취득 뿐만 아니라 주주 등에 대한 假支給金 및 非業務用 不動產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그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측면에서는 開放經濟體制에 맞추어 金利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政策金融도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줄여나가는 등 金融自律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기관에서도 不實債權이 생기는 대로 정리하여 과거처럼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14. 農漁民 所得増大를 위하여는 무엇을 개정했나?

이번에 농어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農業用 油類에 대해 간접세를 免除하고 農漁家 목돈마련 貯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 하였다.

농업용 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營農費節減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운기·이앙기·양수기 등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値稅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농민이 농협 단위조합을 통하여 농업기계용 免稅油類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기름값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현행가격	면세시가격	가적인하효과
휘발유(ℓ 당)	660 원	318 원	51.8 %
경 유(ℓ 당)	277 원	233 원	15.9 %

예를 들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農家가 연간 700ℓ의 경유를 사용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기름값이 194,000 원이 들었으나 앞으로는 163,000 원이면 되므로 3만원 정도 절약된다. 그리고 이앙기의 경우 연간 100ℓ의 휘발유를 쓴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휘발유 값이 66,000 원이 들었으나 앞으로는 그 절반수준 정도인 32,000 원 밖에는 들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로 세금면제로 인한 농업용 유류에 대한 價格引下 效果를 보면 위의 表와 같다. ♣